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78
------------	-------

발의연월일 : 2023. 7. 20.

발의자 : 이달곤 · 지성호 · 윤두현

양금희 · 박덕흠 · 정희용

백종현 · 권명호 · 강기윤

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2는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들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자에 한하여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입학 시에는 양성기관 자격이 있었으나 졸업 시에 양성기관 자격을 상실한 기관 졸업생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이에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을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